##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10

발의연월일: 2024. 7. 18.

발 의 자: 강훈식·허 영·문진석

박희승 · 김성회 · 이훈기

신영대 • 이정문 • 이개호

한정애 • 이재관 • 민형배

서삼석 · 김승원 · 이성유

의원(15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시간에 대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주 5일제 근무로 운 영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선진국은 이미 주 4일제를 도입하고 있고, 최근 우리나라도 일자리 나누기의 필요성, 여가문화의 확산 등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현행 법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에서 주 36시간으로 단축하고 그에 맞추어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의 규정을 정비하여 주 4.5일제 근무를 도입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 및 고용기회 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 제51조제1항·제2항, 제51조의2제1항, 제51조의3).

법률 제 호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 중 "40시간"을 "36시간"으로 한다.

제51조제1항 단서 중 "48시간"을 "44시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52시간"을 "48시간"으로 한다.

제5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52시간"을 "48시간"으로 한다.

제51조의3 중 "40시간"을 "36시간"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	제50조(근로시간) ①
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u>36시간</u>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
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	로시간제) ①
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	
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	
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	
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	
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	
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	
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	,
한 주의 근로시간은 <u>48시간</u> 을	<u>44시간</u>
초과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②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	
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	

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 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수 없다.

- 1. ~ 4. (생략)
- ③·④ (생 략)

제51조의2(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

-48시간
<u>40'   1'.</u>
·
4 (5150 1 -1 4)
1. ~ 4.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51조의2(3개월을 초과하는 탄
력적 근로시간제) ①
· 10 x] 7}
<u>4</u> 8시 <u>간</u>

할 수 없다.

- 1. ~ 4. (생략)
- ② ~ ⑥ (생 략)

제51조의3(근로한 기간이 단위기 간보다 짧은 경우의 임금 정 산) 사용자는 제51조 및 제51 조의2에 따른 단위기간 중 근 로자가 근로한 기간이 그 단위 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단 위기간 중 해당 근로자가 근로 한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에 4 인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 전부에 대하여 제56조제1항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51조의3(근로한 기간이 단위기
간보다 짧은 경우의 임금 정
산)
36
 시간
-,